

## [2026-3] 0000 이의신청 요약

### ■ 사실 관계

- XXXX.XX.XX. 신청인 취득세 감면 적용 후 신고·납부
- XXXX.XX.XX. 처분청, 추정요건 확인 후 감면 취득세 추징 자진신고 안내문 통지
- XXXX.XX.XX. 신청인, 감면 취득세 등 신고한 건에 대한 경정청구
- XXXX.XX.XX. 처분청, 신청인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
- XXXX.XX.XX. 신청인, 이의신청 제기

### ■ 쟁점 사항

-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애인 자동차 감면을 받은 후 신청인의 세대 분리는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실질적으로 쟁점 자동차는 장애인인 자녀가 이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감면 내용에 대한 안내 부족은 중대한 과실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

### ■ 종합 의견 : 기 각

### ■ 검토 의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동법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함.
- 담당공무원의 안내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 행위에 불과한 점에서 그 행위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신청인의 세대 분리를 한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추징을 제외하는 사유로 보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개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